투자설명서 주요 변경사항

효력발생일 : 2020 년 09 월 25 일

▶ 투자신탁명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H (채권-재간접형)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UH (채권-재간접형)

▶ **주요변경내용:**

- 글로벌 투자설명서 반영 (하이일드 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등)
- 정보 업데이트
- 법령 반영 (자본시장법 개정 등)
- 기재 수정 (외부 회계법인 변경 등)

▶ **변경내용:**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H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정보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	**(업데이트)**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정보 업데이트	운용현황 등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마. 재간접형 구조	정보 업데이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내용 등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마. 재간접형 구조	기재 명확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내용 기타: - 외국 집합투자기구에는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순자산가치 비율에 대한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함.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내용 기타: - 외국 집합투자기구에는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순자산가치 비율에 대한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함. **-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펀드의 채권형 펀드에 속하는 펀드로서, 하위펀드 투자목적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적격등급 이하 또는 하이일드 증권에 대한 투자는 각 하위펀드 순자산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임(2019년 12월자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 글로벌 투자설명서 기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기재 명확화	**(4) 위험관리** **(가) 환위험 관리 전략** (…) 목표 환헤지비율은 포트폴리오	**(4) 위험관리** **(가) 환위험 관리 전략** (…) **모투자신탁의** 목표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H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및 위험관리		순자산의 약 100% 수준이지만,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환헤지비율은 **외화** 포트폴리오 순자산의 약 100% 수준이지만,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다. 과세	법령 반영 기재 수정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8%, 지방소득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법인세율 22%, 지방소득세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기재 수정 (외부 회계법인 변경)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될 예정이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삼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될 예정이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H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정보 업데이트	해외업무위탁회사 FIL Investments International의 주소: Oakhill House, 130 Tonbridge Road, Hildenbrough, Kent, England	해외업무위탁회사 FIL Investments International의 주소: **Beech Gate, Millfield Lane, Lower Kingswood, TADWORTH, SURREY, KT20 6RP, United Kingdom**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법령 반영	⑤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⑤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내용:**

- 글로벌 투자설명서 반영 (하이일드 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등)
- 정보 업데이트
- 법령 반영 (자본시장법 개정 등)
- 기재 수정 (외부 회계법인 변경 등)

▶ **변경내용:**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UH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요약정보	정보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내용 기재	**(업데이트)**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제출되는 간이투자설명서 정정신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정보 업데이트	운용현황 등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마. 재간접형 구조	정보 업데이트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내용 등	**(업데이트)**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마. 재간접형 구조	기재 명확화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내용 기타: - 외국 집합투자기구에는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순자산가치 비율에 대한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함.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주요 내용 기타: - 외국 집합투자기구에는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순자산가치 비율에 대한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함. **-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피델리티펀드의 채권형 펀드에 속하는 펀드로서, 하위펀드 투자목적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적격등급 이하 또는 하이일드 증권에 대한 투자는 각 하위펀드 순자산의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임(2019년 12월자 피델리티펀드(Fidelity Funds) 글로벌 투자설명서 기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다. 과세	법령 반영 기재 수정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UH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8%, 지방소득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법인세율 22%, 지방소득세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기재 수정 (외부 회계법인 변경)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될 예정이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삼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될 예정이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정보 업데이트	해외업무위탁회사 FIL Investments International의 주소: Oakhill House, 130 Tonbridge Road, Hildenbrough, Kent, England	해외업무위탁회사 FIL Investments International의 주소: **Beech Gate, Millfield Lane, Lower Kingswood, TADWORTH, SURREY, KT20 6RP, United Kingdom**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법령 반영	⑤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⑤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 6 조제 6 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피델리티 미달러 채권 증권 자투자신탁 UH (채권-재간접형)			
항 목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가. 의무해지		경우는 제외	법 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위 정정사항표는 주요 정정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